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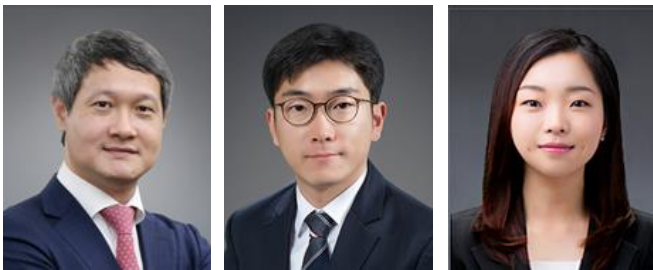
■ 주요 업무 사례 ■

제과회사 영업소장이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제과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

제과회사에서 영업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 재직기간 중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위 수당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.

지평 노동팀은 회사를 대리하여, "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장·야간·휴일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, 법정 제 수당에 상응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으며,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,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관리·감독 업무 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적용 대상이 아니다"라고 주장하였습니다. 이에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.

[담당 변호사]



이광선 변호사

권영환 변호사

신혜주 변호사